순자본비율 및 잉여자본 공시

단위 : 백만원

구분	2018.06	2018.03
영업용순자본(A)	41,111	35,529
총위험액(B)	9,776	9,445
필요유지자기자본(C)[1]	10,500	10,500
순자본비율 ((A-B)/C*100) [2]	298.42%	248.42%
잉여자본(A-B)	31,334	26,084

1) 인가업무 및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의 70%임

2) 2016년부터 순자본비율 산출(분기단위) 시행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3장 제1절 제30조 (재무건전성 유지)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SHINAN 신안그룹 바로투자증권주식회사 BARO Investment & Securities